

1. The Agency has determined that a standard, gravity-type distribution system to provide the premises with adequate pressure is neither presently feasible nor contemplated within the foreseeable future.
2. The owner(s) agrees to install individual storage and pumping facilities and a backflow device necessary to ensure an adequate water supply at the premises at all times. In such cases, the equipment shall be installed and maintained on the applicant's side of the meter at his own risk and expense.

In no event will a Low Pressure Service (or an extension resulting in low pressure conditions) be granted if, in the opinion of the Agency, the premises are not situated within the immediate vicinity of existing Agency facilities containing sufficient water storage to ensure an adequate volume of water to serve said premises.

### ***Section 8 - Reading of Meters***

All water supplied by the Agency will be measured by means of water meters. The cubic foot will be the unit of measure, and the amounts charged for service shall be based on the current rates established by the Agency.

In general, meters shall be read on a monthly basis. As it is not always practicable to read meters at equal intervals, the period between reading dates may vary as much as five days.

### ***Section 9 - Unreadable Meters***

Bills for service will be based on an estimate if a meter fails to register the volume of water consumed or cannot be read. In estimating consumption, due consideration will be given to fluctuations in usage caused by seasonal changes or known service interruption.

Where a meter cannot be read without undue difficulty because of obstruction, the customer will be notified and requested to correct the condition. The Agency has the right to discontinue the service if the condition is not corrected. Where services is turned off for such cause, the Agency may require payment of a turn-on charge as provided for in the Schedule of Rates and Charges.

### ***10항 - 서비스 중단 방침, 고지서 납부<sup>23</sup>***

중단하는 수도국의 방침을 성립한다. 방침의 조항과 최종 단수 통지서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가로그, 베트남어, 한국어, 그리고 서비스 지역에 사는 주민이 최소한 십퍼센트(10%)가 사용하는 언어로 읽어볼 수 있다. 방침은 수도국의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주거용 수도서비스가 작년에 중단된 횟수를 매년 인터넷 웹사이트에 보고하고 만일 법으로 규정하면, 주정부 수도자원통제국에 보고한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짜로부터 요금을 납부해야하고, 십(10)일이 지나면 체납으로 처리한다. 이사회가 결정하고 수정하고 수수료와 요금 일정에 나온 바에 따라서, 체납에 대한 벌금은 체납된 후 십오(15)일에 수도계정의 미납 요금에 적용하고 요금을 납부할 때까지 매월 부과한다.<sup>24</sup>

<sup>23</sup> SB998에 의해 10항, 11항, 12항을 수정함 1/24/2023

<sup>24</sup> 문단을 수정함 10/27/98

고객은 부채 중에 수도서비스를 계속 받기 위해 요금을 선불로 납부해도 된다. 사용할 때까지 고지서에 현재 크레딧 잔액으로 나타난다. 보증금으로 낸 돈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

수도서비스 계정을 건물주 이름으로만 개설하며, 규칙과 규정의 13D 항의 규정한 바는 제외한다. 세입자가 매월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집주인과 정했으면, 고지서는 세입자 주소로 보내게 요청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체납요금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고, 만일 세입자가 규칙과 규정 13D 항의 규정한 바에 따라서 직접 고객이 되기로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납 통지서는 입주자에게 보내고, 만일 집주인이 기록상 고객이면 집주인에게 보낸다.<sup>25</sup>

수도국은 규칙과 규정에 관련된 목적으로 건물주의 주소가 계정에 관련된 건물 주소라고 가정하고, 건물주가 다르다고 수도국에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건물주는 수도국에 정확한 최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알려줄 책임이 있다. 연락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면 즉시 건물주가 알려야 한다.

만일 건물주가 제3자(건물 관리회사)에게 건물과 관련된 수도계정을 관리하게 정하면, 계약한 사실을 수도국에서 통보받아야 하며, 다르게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도국은 제3자에게 직접 연락한다.

관리자와 재무국장은 재량으로 다음 지침에 따라서 개인 건물주와 분할납부약정을 맺는다.<sup>26</sup>

새로운 수도요금과 수수료를 백이십(120)개월과 최고 10,000달러까지 납부할 것을 허가하며, 계량기와 역류방지 기계 설치비, 서비스 설치비를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다. 분할납부 계약서의 이자는 매년 10%를 부과한다.

건물주가 분할납부약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따라서 요금전액을 납부할 때까지 수도서비스가 종료된다.

분할납부약정은 기록에 남고, 영향받는 건물의 선취권으로 성립되며, 계약을 시작한 상속자, 후임자, 건물주의 대리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 11항 - 체납된 계정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십(10)일 지나면 계정은 체납이 된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칠십(70)일이 지나면 계정이 체납 상태면 수도서비스가 중단된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오십(50)일이 지나면 편의상 체납 통지서를 보낸다. 체납으로 인한 단수일로부터 칠(7)영업일 전에 최종 단수통지서를 보낸다. 우편배달 불가능으로 단수통지서가 돌아오면, 공무원은 주택을 방문해서 단수통지서를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두고 오는 성실한 노력을 한다.

이 조항에 따라서 만든 최종 단수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1) 고객의 이름과 주소, 2) 체납 요금, 3)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요금납부 또는 납부약정 날짜, 4) 체납요금을 납부하는 시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의 설명, 5) 고지서 검토와 항소를 신청하는 절차의 설명, 6) 고객이 체납된 서비스 요금의 분할납부 등 연기, 인하, 대체납부약정을 요청하는 절차의 설명

정상납부기간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고객은 연체료와 중단료 또는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 대체 납부약정을 신청해도 된다. 수도국은 신청을 검토하면서 모든 상황을 재고하고 궁극적으로 납부약정이 타당한지 결정하게 된다. 납부약정은 요금납부일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약정이 있다. 만일 고객이 허가된 납부약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후속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중단 통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25 문서 수정 7/28/94

26 문단과 하부문단을 7/23/96 추가함, 8/27/96과 1/27/98 수정

고객이 고지서와 요금, 또는 체납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고객은 수도국 공무원에게 530-533-4578으로 전화하거나 2310 Oro-Quincy Highway, Oroville에 위치한 사무실에 직접 찾아간다. 공무원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갔지만 고객이 여전히 고지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부장에게 분쟁의 통지서나 최종 체납 통지서를 받고 오(5)영업일까지 고지서를 즉시 항소한다. 통지서나 최종 체납 통지서의 오(5)영업일까지 문서로 전달하지 않으면 고객의 항소권이 소멸되고 약식 거부당한다. 적시에 제기한 항소에서 고객은 고지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야 하고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배달한다. 부장은 항소문에 대한 판결을 적시에 내리고, 분쟁 고지서에 나온 모든 요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간주한다. 부장은 항소한 고객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또는 부장이 고객의 항소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심리를 한다. 부장의 판결에 대한 부장의 결정은 고객에게 문서로 보내야 한다. 부장에게 항소문이 대기 중이면,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는다.

부장에게 보낸 항소문은 고객이 요금 인하를 요청하는 유일한 절차이다. 고객의 요금을 계산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부장은 재량으로 요청을 허가한다. 잠정적 요금 인하는 주거용 서비스만 가능하다.

수도국 공무원에게 전달한 보충서류와 요청서는 주거용 고객이 요금의 분할납부약정 등으로 연기하거나 대체납부일정을 신청하는 유일한 절차이다. 자격있는 고객은 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문서를 제출한다. (1) 주거용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의 서비스 주소에 사는 입주자가 생명에 위협받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주치의사의 증명서. 그리고 (2) 고객이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형편이 안된다고 증명한다. 고객의 가족이 캘럭시, 캘프레시, 일반보조금, 메디칼, 보충보장수입/주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보조 영양 프로그램을 현재 받고, 또는 고객의 일년 수입이 연방 빈곤 수치의 200퍼센트보다 적다고 신고하면 정상 청구주기에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형편이 안된다고 간주한다.

앞서 말한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은 분할 납부약정을 맺고 체납된 요금을 삼(3)개월 동안 분할하고 매월 쌓이는 현재 요금에 더해서 납부하기 위해 연기할 자격이 있다. 수도국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한 계약서의 분할 납부 기간은 삼(3)개월보다 더 길면 안되지만 십이(12)개월을 넘으면 안된다. 고객이 계약을 맺고 최소한 육십(60)일 동안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5)영업일 통지서를 건물에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서비스가 중단된다. 주거용 고객만 고지서의 연기와 분할납부를 신청해도 되고 2310 Oro-Quincy Highway, Oroville에 위치한 사우스 페더 수도국 사무실 전화번호 530-533-4578 으로 연락해서 서비스 중단하기 전에 맺어야 한다.

만일 체납 계정의 잔액을 단수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수도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서비스를 복구하기 전까지 계정의 잔액을 납부해야 한다.<sup>27</sup>

건물에 수도서비스가 중단되면, 체납 통지서와 문고리로 주인과 거주자에게 통지한다. 영향받은 수도서비스에 연결된 건물의 방화용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으며 방화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으로 보호받는 지역은 위협에 노출된다.

서비스를 복구한 후, 정상 청구 주기에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고객의 연결비는 정상 근무시간에 재연결을 하면 50달러("켜기")를 초과하면 안되고,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근무시간 이후") 재연결했으면 150달러를 초과하면 안된다. 하지만 50달러와 150달러보다 적으면, 규정의 파트 D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

## 12항 - 서비스 요금

편의상 체납 통지서를 발급하면, 계정에 "편의상 체납 통지서 서비스 요금"을 계정에 추가하고 체납된 요금에 포함한다. 이사회가 요금을 결정하고 수정하고, 효율과 요금 일정에 나타난다.

최종 단수 통지서를 발급하면, "최종 단수 통지서 요금"을 계정에 추가하고 체납된 요금에 포함한다. 이사회가 요금을 정하고 수정하고, 효율과 요금 일정에 나타난다.<sup>28</sup>

27 문단을 추가함 10/27/98

28 문단을 추가함 10/27/98

수도서비스가 체납으로 중단되면 “계량기 잠그기 서비스 요금”을 계정에 추가하고 체납된 요금에 포함한다. 이사회가 요금을 정하고 수정하고, 요금과 요금 일정에 나타난다. 벅 카운티 세금대장에 요금잔액을 배치하기 전에 계정의 전액요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복구하는 추가 요금을 계산하지 않는다.<sup>29</sup>

최종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체납된 요금을 수표나 신용카드로 납부했지만, 은행에서 수표를 지불하지 않고 부도처리한 경우, 규칙과 규정의 11항에 따라서 통지서를 보냈으면,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서비스가 즉시 중단된다. 서비스를 복구하기 전에, 계정의 전액요금과 부도난 수표의 은행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된다.

### 13항 - 서비스 중단

#### A. 수도서비스를 중단하는 이유:

##### 1. 고객의 요청

수도국에 미리 24시간 통지를 준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고객이 요청한 날짜에 수도가 끊어진다. 수도국에서 서비스를 종료하는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고객은 건물에 공급받은 모든 서비스에 책임이 있다. 건물주가 요청하는 문서만 허용한다.

##### 2. 고지서 요금 미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최소한 칠십(70)일 이후 계정이 체납상태이면 수도국에서 수도를 끊는다.<sup>31</sup>

규칙과 규정 11항에 따라서 단수 통지서를 보냈으면 고지서 요금의 미납으로만 수도서비스를 중단한다. 고객은 11항에서 규정한 고지서를 항소해도 되고, 수도국에서 항소가 대기 중이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다. 정상 청구주기에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단수 위기에 처하고 자격있는 고객은 11항에 규정된 체납요금을 분할 납부할 기회가 있다.

고객은 미납으로 인한 단수를 피하는 방법으로 잠정적 연기와 분할 납부 등을 의논하려면 2310 Oro-Quincy Highway, Oroville에 위치한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 사무실, 전화번호 530-533-4578으로 연락한다.

##### 3. 규정의 불이행

고객의 수도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도국이 수도를 단수, 재분류, 또는 제거한다.

수도국에서 규정 위반으로 서비스를 꺼버리면, 수도서비스를 복구하기 전에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요금과 더해서 이사회가 결정하고 수수료와 요금 일정으로 규정한 복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sup>32</sup>

#### B<sup>33</sup>.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

##### 1. 부장에게 고객이 분쟁이나 고충신고한 항소가 대기 중인 경우

##### 2. 고객이 고지서 요금을 납부할 시간을 연장받은 경우. 또는

29 문단을 수정함 10/27/98

30 문단을 수정함 10/27/98

31 문단을 수정함 10/27/98

32 문단을 수정함 10/27/98

33 하부조항을 추가함 10/27/98

3. 고객이 (a)서비스의 중단으로 건물에 사는 입주자가 생명에 위협받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면허증있는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b) 그리고 고객이 정상기간에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형편이 안된다고 증명한 경우. 그리고 (c) 수도권과 분할납부약정을 맺은 경우.
  - a. 고객의 가족이 캘웁스, 캘프레스, 일반보조금, 메디칼, 보충보장수입/주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보조 영양 프로그램을 현재 받고, 또는 고객의 일년 수입이 연방 빈곤 수치의 200퍼센트보다 적다고 신고하면 정상 청구주기에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형편이 안된다고 간주한다.

**C. 월 서비스 요금 지속<sup>34</sup>**

모든 계정에 부과된 월 서비스 요금은 사용한 금액에 관계없는 수도국의 비용을 위한 이다. 계정 관리, 행정, 시스템 유통 관리, 화재 흐름, 수도국의 계량기에서 서비스 라인 관리 등. 특정 계정 사용량에 상관없이 비용은 일년내내 지속된다. 따라서 월 서비스 요금은 월 단위로 계정에 부과되고 사용량과 상관없고,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는 예외이다.

삼십(30)일 넘는 기간동안 수도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고, 또는 주인이 요청하거나 수도국이 시작해서 수도국 직원이 서비스를 물리적으로 중단한 경우가 아니면, 월 서비스 요금은 계정에 부과된다.

**D.<sup>35</sup> 공공 유틸리티 법 16481.1 B항과 건강안전법 § 116916 (b)을 이행하기 위해 다세대 주택 세입자가 개별적 계량기 또는 마스터 계량기로 공급받는 주거용 입주자에게 수도서비스를 종료함**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은 주인, 관리인,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인 다세대 주택 구조와 모빌 홈 파크에서 마스터 계량기와 개별적 계량기로 주거용 입주자에게 수도를 공급한다.

마스터 계량기 계정이나 개별적 계량기 계정이 연체된 상태로 마스터 계량기와 개별적 계량기에 서비스가 종료될 상황이면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에서 주거용 입주자에게 권리를 알려주게 되는 절차를 규칙과 규정으로 정한다.

**1. 주거용 입주자 통지서**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은 다세대 주택이나 모빌홈 파크나 비슷한 시설에서 주인, 관리인,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이고 계정이 연체되었으면, 통지서에 나온 날짜에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전까지 주택의 유닛에 전부 게시하면서 주거용 입주자에게 알리는 성실한 노력을 한다. 주택의 유닛 문에 통지서를 게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으면, 통지서 복사본 두장을 구조물이나 모빌홈 파크나 비슷한 장소에 들어가는 곳과 공용 공간에 게시합니다. 통지서는 영어이고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은 상당히 많은 주거용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주 언어라고 판단하면 실행가능한 정도에서 다른 언어로 작성합니다. 통지서는 굵고 큰 글씨로 최소한 크기는 14입니다.

통지서에서 주거용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 a. 서비스를 청구받는 사람이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의 직접적 고객이 될 권리가 있다.
- b. 체납된 계정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이 방식으로 직접적 고객이 된다.
- c. 서비스 종료를 예방하거나 서비스를 다시 개통하려면, 입주자는 아래 규정에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에 연락한다.

34 휴면계정 비상요금 삭제함 2/24/09

35 하부조항 추가함 11/23/04

2. 입주자가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의 직접적 고객이 되기 위한 방침

다세대 주택, 모빌홈 파크나 비슷한 시설에서 주거용 입주자가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의 직접적 고객이 되고 서비스 종료를 피하거나 서비스를 다시 개통할 수 있다. 입주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2310 Oro-Quincy Highway, Oroville에 위치한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 사무실, 전화번호 530-533-4578으로 연락한다.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은 입주자가 신용을 쌓는 조건으로 신용도를 증명하게 요구한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월세 또는 신용거래 채무를 제때 납부한 증거로 신용도를 정한다.

벗카운티 협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적조언을 하는 커뮤니티 법률센터를 추천하며 25 Main Street, Suite 102, Chico에 위치하고 전화번호 530-898-4354으로 입주자가 연락하면 된다.

입주자나 입주자의 변호인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규칙과 규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은 입주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의무는 없다. 입주자 한 명 이상이나 입주자 변호인이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이 만족할만큼 마스터 계량기 계정에 후속 요금에 대한 책임을 인수받을 의사가 있으면, 요건에 부합하는 입주자 또는 조건에 맞는 대리인에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한다. 입주자 변호인은 세입자 협회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자유로운 해석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은 다세대 주택, 모빌홈 파크 또는 비슷한 시설에서 마스터 계량기로 서비스를 공급받는 입주자가 요금 미납으로 서비스가 종료하지 않기 위해 규칙과 규정을 자유롭게 해석한다.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은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지속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4. 서비스 종료의 제약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은 마스터 계량기 계정이 체납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금 미납으로 수도서비스를 종료하지 않는다.

- a. 고객 분쟁이나 고충신고를 조사하고 대기 중인 경우
- b. 고객이 고지서 요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 c. 고객이 관공서에 빚진 채무가 있거나, 체납된 계정에 대한 채무 또는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이 아닌 다른 관공서에 채무가 있는 경우.
- d. 고객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다른 건물에 관련된 체납된 계정
- e. 보건국 또는 건물국장이 수도서비스의 종료로 인해 입주자나 대중에게 건강이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증하는 경우.
- f. 규칙과 규정의 13B항에 규정된 종료의 제약이 발효한 경우

5. 법의 준수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사우스 페더 수도전기국은 공공 유틸리티법 §16481.1과 건강안전법 § 116916에 따른 요건을 준수한다. 가끔씩 수정하고 법으로 요약한 절차가 규칙과 규정보다 우선적이다.

**Section 14 - Removal of Meter or Service Lateral**

When the service is discontinued for any reason, the Agency has the right to remove the meter and other equipment.

Where the meter alone has been removed, there will be a charge for resetting a meter provided for in the Schedule of Rates and Charges.

Where the service lateral has been removed, the property owner will be responsible for having the service restored at his expense.<sup>36</sup>

**Section 15 - Change in Size of Service**

Changes in the size of standard service requested by the owner of the premises or required by the Agency will be made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A. Reduction in Size of Service**

A requested change to a smaller size service must be approved by the Agency and will be made without charge to the applicant.

Customers will be allowed to reduce the size of their water meter, without relinquishing their right to the original larger service size. When water service is originally established, all connection fees and system capacity charges relating to that size service are paid to the Agency. If, at a later date, a customer elects to reduce the size of the service, they will continue to have the right to the larger service size.<sup>37</sup>

**B. Increase in Size of Service**

A requested increase in the size of a service must be approved by the Agency. The installation of the larger service shall be made by a licensed contractor at the property owner's expense.

If the customer's rate of consumption results in excessive wear of the meter or is such that the meter is unable to measure the flow of water accurately, the Agency may increase the size of the service and require the customer to pay the actual installation costs.<sup>38</sup>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Agency to recover the cost of providing service to a customer. As such, at the time a meter is reinstalled or enlarged in size at the request of the customer, the Agency will apply the charges established by the Board of Directors in effect at the time for resetting a meter and/or turning on the service, and any other applicable charges.<sup>39</sup>

In addition, interim compliance with the Agency's Rules and Regulations, Section 24, 'Control of Backflow and Cross-Connections,' involving voluntary removal of a meter, shall not constitute the abandonment of the customer's right to the larger size service.<sup>40</sup>

36 Paragraph amended 2/27/96

37 Paragraph added 7/28/94

38 Paragraph amended 7/28/94

39 Paragraph added 7/28/94

40 Paragraph added 7/28/94